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21호 2014. 2. 19.(수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14-21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승인사항 고시 ———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321호(2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 2014 - 21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승인사항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4. 2. 19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4-1호(2014. 1. 20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- 마을어장 집입로 개설로 인하여 어업인 재산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
- 718.5m²(직접 718.5m², 간접 - m²)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43-16번지선 공유수면(마을어업권 20-2)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
 - 공사기간 : 2014. 3. 1. ~ 2014. 4. 30.

사 천 시 공 보

제321호(3)
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일자 : 2014. 1. 17.
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

-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-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